

의안번호	2215707
의 퇴 인	윤준병 의원
회 답 일	2026. 4. 30.
추 계 번호	25B7350

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이 확대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26억 7,100만원, 2031년 137억 2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658억 5,700만원(연평균 131억 7,200만원)으로 추계됨
- (국 비) 365억 8,800만원(연평균 73억 1,800만원)
 - (지방비) 292억 6,900만원(연평균 58억 5,400만원)
 - 본 추계는 추계가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하고, 추계가 가능한 조문에 대하여 일정 예산의 편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, 향후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금액을 상회할 수 있으며, 건강검진 대상자 수 및 건강검진료 등 일정 요인을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, 향후 건강검진 대상자 수, 검사비용 단가, 수검률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안 제11조의3(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)	12,671	12,933	13,141	13,410	13,702	65,857	13,172
국비(50%)	7,039	7,185	7,301	7,450	7,613	36,588	7,318
지방비(40%)	5,632	5,748	5,840	5,960	6,089	29,269	5,854

- 주: 1. 건강검진 추가 지원대상은 만 50세 미만 여성농어업인과 만 80세 이상 여성농어업인으로 가정
 2. 검사비용, 검사주기, 수검률 및 지원율은 현행 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준용
 3. 국비 및 지방비 분담률은 50:40으로 가정(자부담 10%)
 4. 단수 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(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) 신설 및 같은 조 제4항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여성농어업인 연령 특성 및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검진을 설계하여야 함(제2항)	의무규정
		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전체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함(제3항)	의무규정
	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과 건강검진을 통하여 발견된 질환의 예방 및 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4항)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(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) 신설 및 같은 조 제4항	○	• 현행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참고하여 추계(제2항 및 제3항)
		×	• 제3호 - 개정안은 건강검진을 통하여 발견된 질환의 예방 및 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의 범위, 1인당 평균 치료 비용 및 지원 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(제4항)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현행법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

-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2026년 기준 만 50~79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추계에서는 만 50세 미만 여성농업인과 만 80세 이상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에 대해 추계함
- 해양수산부의 경우 2026년 기준 만 50세 이상의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추계에서는 만 49세 이하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에 대해 추계함

[표 2] 여성농업인 및 여성어업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예산 현황: 2022~2026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세부사업	2022	2023	2024	2025	2026
여성농업인 (농림축산식품부)	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(4135-397)	1,990	1,990	4,300	6,500	9,640
	-검진비	1,690	1,690	3,300	5,500	8,640
	-검진관리비	300	300	1,000	1,000	1,000
여성어업인 (해양수산부)	어업인 삶의 질 향상(3440-312)	371	371	1,687	1,172	1,011
	-검진비	321	321	1,163	805	536
	-행정비	50	50	524	367	475

자료: 각 부처, 「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(II-1)」

- 검사비용, 검사주기, 수검률 및 지원율은 현행 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준용
 - (검사비용) 여성농업인 220,000원, 여성어업인 200,000원
 - 추계기간 동안 1인당 검사비용은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 - (검사주기) 2년에 1회
 - 추계기간 동안 특수건강검진 대상 여성농어업인 수 50%
 - (수검률) 50%
 - 사업설계 당시 적용한 50% 적용
 - (지원율) 국비 50%, 지방비 40%(자부담 10%)
- 건강검진 대상자 수 증가에 따라 검진관리비가 일부 증가할 수 있으나, 그 증가분을 예측하기 곤란하여 본 추계에서는 추계대상에서 제외함
-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

□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연령대별 여성농업인 현황은 다음과 같음

[표 3] 연령대별 여성농업인 현황

(단위: 명)

		2021	2022	2023	2024	2025	연평균 증가율
여성농업인	전체	1,148,292	1,170,957	1,172,219	1,162,696	1,160,707	
	50세 미만	89,254	86,829	82,066	75,913	73,890	△4.61
	50세~79세	888,205	893,721	894,103	887,161	886,041	△0.06
	80세 이상	170,833	190,407	196,050	199,622	200,776	4.12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

□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추가 지원대상은 최근 5년(2021~2025)간 만 50세 미만 여성농업인 및 만 80세 이상 여성농업인 수와 그 추이를 바탕으로 추산

[표 4] 건강검진 추가 지원대상 산출: 2027~2031년

(단위: 명)

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
전년도 만 50세 미만 여성농업인(A, 명)		73,890	70,484	67,235	64,911	61,180	58,360
연평균 증가율(B)	△4.61%						
해당연도 만 50세 미만 여성농업인 [C=A×(1+B), 명]	73,890	70,484	67,235	64,911	61,180	58,360	55,670
전년도 만 80세 이상 여성농업인(D, 명)		170,883	177,872	185,201	192,831	200,776	209,048
연평균 증가율(E)	4.12%						
해당연도 만 80세 이상 여성농업인 [F=D×(1+E), 명]	170,883	177,872	185,201	192,831	200,776	209,048	217,661
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지원 추가대상[G=(C+F)/2, 명]		124,178	126,218	128,871	130,978	133,704	136,666

주: 추계기간 동안 최근 5년(2021~2025)간 만 50세 미만 여성농업인 연평균 증가율(△4.61%)과 만 80세 이상 여성농업인 연평균 증가율(4.12%)을 변동 없이 적용하고, 현행 검사 주기 2년 적용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1인당 건강검진 단가는 현행 여성농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참고하여 산정
 - 1인당 220,000원
 - 추계기간 동안 1인당 검사비용은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- 검사주기, 수검률 및 지원율은 현행 여성농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 준용
 - (검사주기) 2년에 1회
 - 추계기간 동안 건강검진 지원 추가대상 여성농업인 수 50%
 - (수검률) 50%
 - 사업설계 당시 적용한 50% 적용
 - (지원율) 국비 50%, 지방비 40%
 - 현행 여성농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율 준용(자부담 10%)
- 추계결과, 여성농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에 만 50세 미만 여성농업인과 만 80세 이상의 여성농어업인을 추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649억 8,800만원(연평균 129억 9,800만원)으로 추계됨
 - (국 비) 361억 500만원(연평균 72억 2,100만원)
 - (지방비) 288억 8,300만원(연평균 57억 7,700만원)

[표 5]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(단위: 명,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건강검진 대상자 (A, 명)	126,218	128,871	130,978	133,704	136,666	-	-
1인당 건강검진료 (B, 만원/명)	22	22	22	22	22	-	-
수검율(C, 50%)	50%	50%	50%	50%	50%	-	-
추가재정소요 (D=A×B×C×90%, 백만원)	12,496	12,758	12,967	13,237	13,530	64,988	12,998
국비(50%)	6,942	7,088	7,204	7,354	7,517	36,105	7,221
지방비(40%)	5,554	5,670	5,763	5,883	6,013	28,883	5,777

주: 1. 건강검진 추가 지원대상은 만 50세 미만 여성농업인과 만 80세 이상 여성농업인으로 가정
 2. 검사주기는 2년에 1회로, 1인당 검사비용은 22만원으로 가정하며,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 3. 국비 및 지방비 분담률은 50:40으로 가정(자부담 10%)
 4. 단수 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 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나. 여성어업인 건강검진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

□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연령대별 여성어업인 현황은 다음과 같음

[표 6] 연령대별 여성어업인 현황

(단위: 명)

		2021	2022	2023	2024	2025	연평균 증가율
여성어업인	전체	36,109	38,168	39,338	39,215	38,598	
	50세 미만	4,028	4,119	4,139	4,073	3,940	△0.55
	50세~79세	28,039	29,562	30,682	30,573	30,224	1.89
	80세 이상	4,042	4,487	4,517	4,569	4,434	2.34

자료: 해양수산부

□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지원 추가대상은 최근 5년(2021~2025)간 만 50세 미만 여성어업인 수와 그 추이를 바탕으로 추산

[표 7] 건강검진 지원 추가대상 산출: 2027~2031년

(단위: 명)

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
전년도 만 50세 미만 여성어업인(A, 명)		3,940	3,919	3,898	3,877	3,856	3,835
연평균 증가율(B)	△0.55%						
해당연도 만 50세 미만 여성어업인 [C=A×(1+B), 명]	3,940	3,919	3,898	3,877	3,856	3,835	3,814
여성어업인 건강검진 지원 추가대상(D=C/2, 명)		1,960	1,949	1,939	1,928	1,918	1,907

주: 추계기간 동안 최근 5년(2021~2025)간 만 50세 미만 여성어업인 연평균 증가율(△0.55%)을 변동 없이 적용하고, 현행 검사 주기 2년 적용

자료: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1인당 건강검진 단가는 현행 여성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참고하여 산정

○ 1인당 200,000원

— 추계기간 동안 1인당 검사비용은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
□ 검사주기, 수검률 및 지원율은 현행 여성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 준용

- (검사주기) 2년에 1회
 - 추계기간 동안 건강검진 지원 추가대상 여성어업인 수 50%
- (수검률) 50%
 - 사업설계 당시 적용한 50% 적용
- (지원율) 국비 50%, 지방비 40%(자부담 10%)

□ 추계결과, 여성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에 만 50세 미만 여성어업인을 추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8억 6,900만원(연평균 1억 7,400만원)으로 추계됨

- (국 비) 4억 8,300만원(연평균 9,700만원)
- (지방비) 3억 8,600만원(연평균 7,700만원)

[표 8] 여성어업인 건강검진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(단위: 명,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건강검진 대상자 (A, 명)	1,949	1,939	1,928	1,918	1,907	-	-
1인당 건강검진료 (B, 만원/명)	20	20	20	20	20	-	-
수검율(C, 50%)	50%	50%	50%	50%	50%	-	-
추가재정소요 (D=A×B×C×90%, 백만원)	175	175	174	173	172	869	174
국비(50%)	97	97	97	96	96	483	97
지방비(40%)	78	78	77	77	76	386	77

주: 1. 건강검진 추가 지원대상은 만 50세 미만 여성어업인으로 가정
 2. 검사주기는 2년에 1회로, 1인당 검사비용은 20만원으로 가정하며,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 3. 국비 및 지방비 분담률은 50:40으로 가정(자부담 10%)
 4. 단수 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 자료: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추계가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하고, 추계가 가능한 조문에 대하여 일정 예산의 편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, 향후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 - 건강검진 대상자 수 및 건강검진료 등 일정 요인을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, 향후 건강검진 대상자 수, 검사비용 단가, 수검률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김성원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성원	02-6788-4650	holyone@na.go.kr